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-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1. 5. 25.

2. 발의자: 김기열 의원 등 5명

3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마련 및 과태료 관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4조)
- '심의위원회' 약칭 사용(안 제20조)
-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신설(안 별표6)

5. 참고사항[관계법령]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0조의4, 제20조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제10항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달서구 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처리기간을 변경하고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,
-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재심의 근거를 마련함에 동의함.
- 다만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제2항에서 공무원 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조례안에 또다시 규정하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수정내용

조례안	수정(안)	사유
<p>제14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 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u>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</u></p>	<p>제14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 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후단 삭제></p>	<p>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</p>